

수원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나653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선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아

담당변호사 윤재두, 윤지원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1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21287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와 D조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예금에 관하여 체결된 2018. 6.

12.자 신탁약정은 72,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외에 이 법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3행의 “수원지방법원(2019나65320호)은” 다음에 “2021. 2. 4.”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의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예금을 피고 B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

○ 제1심판결문 제4면 9~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1행 및 2행 사이에 다음의 문구를 추가한다.

『나. 피보전채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원고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1행의 “나.”를 “다.”로, 제1심판결문 제5면 6행의 “다.”를 “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6행 부분에 다음의 문구를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E에게 적극재산이 없어 소외 조합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소외 조합의 판결금 채무를 추심할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은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체결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조합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소외 조합의 판결금 채무를 용이하게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 다음에 다음의 문구를 추가한다.

『[원고는 소외 조합의 청산 절차에서 청산인인 피고 C이 하여야 할 청산 업무를 감사인 피고 B가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2항에 의하면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의 관리를 위해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량, 판사 김나연, 판사 박준규

[별지]

목 록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 계좌로 2018.
7.2. 두차례에 걸쳐 이체된 예금 72,000,000원, 끝.

